

시흥장현 A-3블록
기관추천 특별공급알선

본 공고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시행하는 **시흥장현 A-3블록**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연금 공단(이하 '공단')으로 배정된 일부 세대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알선하여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※ 시행사(LH)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치 및 공무원 특별공급 내역

- 위치 :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, 장현동, 광석동, 능곡동, 군자동 일원 시흥장현 지구 내 A-3블록
- 공무원 특별공급 내역

공공주택명	공급유형	주택형	배정세대수		입주 예정시기
			당첨예정자	예비대상자	
시흥장현 A-3블록	공공분양	59B	1	1	'24년 2월 (예정)

※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중복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(다자녀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 등)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분양조건
공급금액, 전매제한기한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은 아직 미정으로,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(2021. 08.31. 예정)에 따릅니다.

신청자격

- 특별공급알선 공고일([21.08.13.](#)) 현재 청약저축·청약종합저축(청약예금·부금 제외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(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35조 제1항 27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수급자.

※ 단,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자는 제외

- **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,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(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,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준비속까지 포함)이 각각 신청 또는 1인 중복신청,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됨.**
-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알선대상자 선정기준 등

- 선정방법 : 공무원 특별공급 배정세대수보다 신청공무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알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
- 선정기준

순위	대상자	비고
1순위	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	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
2순위	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	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
3순위	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연금수급자	

※ 동일 순위 내에서는 신청자가 기재한 **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, 재직기간**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예정자수의 **6배수**를 심사

점수제 산정 기준

배점항목	배점	배점기준	점수	배점기준	점수
계	100				
① 무주택 기간	35	1년 미만	0.5	8년 이상~9년 미만	18.9
		1년 이상~2년 미만	2.8	9년 이상~10년 미만	21.2
		2년 이상~3년 미만	5.1	10년 이상~11년 미만	23.5
		3년 이상~4년 미만	7.4	11년 이상~12년 미만	25.8
		4년 이상~5년 미만	9.7	12년 이상~13년 미만	28.1
		5년 이상~6년 미만	12.0	13년 이상~14년 미만	30.4
		6년 이상~7년 미만	14.3	14년 이상~15년 미만	32.7
		7년 이상~8년 미만	16.6	15년 이상	35.0
② 부양 가족수	30	0명(신청자 본인)	6	4명	22
		1명	10	5명	26
		2명	14	6명이상	30
		3명	18		
③ 공무원 재직기간	35	1년 미만	2	17년 이상~18년 미만	19
		1년 이상~2년 미만	3	18년 이상~19년 미만	20
		2년 이상~3년 미만	4	19년 이상~20년 미만	21
		3년 이상~4년 미만	5	20년 이상~21년 미만	22
		4년 이상~5년 미만	6	21년 이상~22년 미만	23
		5년 이상~6년 미만	7	22년 이상~23년 미만	24
		6년 이상~7년 미만	8	23년 이상~24년 미만	25
		7년 이상~8년 미만	9	24년 이상~25년 미만	26
		8년 이상~9년 미만	10	25년 이상~26년 미만	27
		9년 이상~10년 미만	11	26년 이상~27년 미만	28
		10년 이상~11년 미만	12	27년 이상~28년 미만	29
		11년 이상~12년 미만	13	28년 이상~29년 미만	30
		12년 이상~13년 미만	14	29년 이상~30년 미만	31
		13년 이상~14년 미만	15	30년 이상~31년 미만	32
		14년 이상~15년 미만	16	31년 이상~32년 미만	33
		15년 이상~16년 미만	17	32년 이상~33년 미만	34
		16년 이상~17년 미만	18	33년 이상	35

※ 동순위 동점자 처리

- ①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
- ②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
- ③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
-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

특별공급 알선신청서 접수

구 분	접수일시	참고사항
• 신청접수	2021. 08. 18. (수) 09:00 ~ 17:00	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(www.geps.or.kr)

- ※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.
- ※ 접수기간 (2021. 08. 18. 09:00 ~ 17:00)내에 접수된 것만 신청접수 건으로 인정됩니다.
- ※ 접수기간 외에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.

- 인터넷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: “특별공급알선 인터넷 신청매뉴얼” 참조
※ 반드시 ‘특별공급알선 인터넷 신청 매뉴얼’을 숙지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심사대상자 발표(공단 홈페이지) : 2021.08.20.(금) 13:00 이후

공단 제출서류

- 제출서류(인터넷 신청 접수 후,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)

필수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1부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신청공무원 본인 명의(배우자 명의 불가), 가입 6개월 경과 · 납입 6회 이상- 통장의 첫장과 납입기록이 있는 마지막장 복사(계좌번호·가입자명·납입횟수 확인 필요)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등재일 등이 모두 나오게 발급-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신청자 본인이 ‘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’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가능- 조회기준일은 특별공급알선 공고일임 (2021.08.13.)- 신청자, 배우자 및 세대원(만 19세 이상) 각 1부를 제출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직계비속(만 19세 이상)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해당자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혼인관계증명서 1부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2018.12.11.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,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

- 제출방법 : 이메일로 제출 (apt@geps.or.kr)
- 제출기한 : 2021.08.26.(목) 18:00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며,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알선대상자를 선정함.
- 알선 및 예비대상자 통보방법 : 개별통보
※ 알선 및 예비대상자는 “알선대상자 확인서·예비대상자 확인서”를 제출해야하며, 확인서 제출 후에는 포기가 불가합니다.
- 알선 및 예비대상자 선정결과 안내(공단 홈페이지) : 2021. 09. 10.(금) 예정
※ 알선 및 예비대상자로 결정된 후, 시행사 공급조건(신청자격, 청약 일정 및 계약체결 등)에 따라야함.
※ 시행사 최종 통보 후,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선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며, 원활한 심사업무를 위하여 진행 과정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행사 공급 일정(예정)

구 분	일 자	참고사항
입주자모집공고	2021.08.31.(화)	LH청약센터 (https://apply.lh.or.kr)
특별공급 청약접수	2021.09.13.(월)	LH청약센터 (https://apply.lh.or.kr)
당첨자발표	2021. 9월 말	LH청약센터 (https://apply.lh.or.kr)

※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, 추후 시행사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[2021.08.18.(09:00~17:00)] 후,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신 분께서는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

★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

- 신청 주택의 동·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전산관리지정기관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
유의사항

- 공고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1개의 주택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중복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택 모두에 대해 무효로 처리합니다.
 - 우리 공단의 임대주택(공무원 임대아파트)에 입주하고 계시거나 입주하였던 사실은 분양아파트 수혜로 보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나 선정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 - 공단의 청약자격 확인결과 세대원 누락 등 입력사항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,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- 알선 및 예비대상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요건 및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 -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공단에서 주택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관리되어, 향후 우리 공단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우리공단 분양주택이나 특별공급알선 주택의 공급 순위가 2순위 또는 3순위로 변경됩니다.
 -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공급 신청접수를 할 경우,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반 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 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 (예비대상자 제외)
 - 당첨 통보 후 주택공급 기관의 청약자격 확인결과 제출서류 및 입력사항 등의 잘못이 확인되어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단될 경우 특별공급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 - 우리 공단에서 특별공급 알선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해야합니다.
- ※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 불가)

■ 공급기준

♣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

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

- 가. 주택공급신청자
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♣ 무주택기간 적용기준

- 1)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을 포함하여 해당 공무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[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]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※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, 주택소유 여부 판정은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)에 따른다.
- 2) 무주택기간은 신청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, 신청공무원의 연령이 **만30세가 되는 날부터**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,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. 이 경우 신청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)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.

♣ 부양가족의 인정기준

- 1) 부양가족은 **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**[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미혼인 자녀로 한정,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)]으로 한다. 다만,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.
- 2) 신청공무원의 **직계존속**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은 **신청공무원**[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]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]이 **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세대주**인 경우로서 알선공고일을 기준으로 **최근 3년 이상**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(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**세대주**)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본다. **다만,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.**
- 3) 신청공무원의 **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**은 알선공고일을 기준으로 **최근 1년 이상**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본다.

♣ 공무원 재직기간 적용기준

-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♣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,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
-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
- **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**
(인터넷사이트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에서 '청약제한사항확인' 조회)
-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
- 과거 특별공급(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)
- 우리공단에서 과거 특별공급(분양 또는 임대 후 분양) 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시행사에 통보된 사실이 있는 자 (**최종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사실이 있는 자**)

♣ 우리공단 특별공급 및 알선대상자 선정근거

- 관련 규정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제1항 제16호

■ 문의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

구 분	시 행 사	공무원연금공단
홈페이지	· https://apply.lh.or.kr	· www.geps.or.kr
문의전화	· 대표번호 : ☎ 1600-1004	· 공단콜센터 : ☎ 1588-4321
문의내용	· 공급금액, 전매제한/재당첨 제한기간 ·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	· 알선대상자 선정기준

2021. 08. 13.

공 무 원 연 금 공 단